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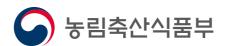
본 안내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 필속안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알리는글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으며 올해도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본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익직불제는?		4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6
3.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8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 <b>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b> 필수안내서		10
5. 부정수급은 절대금지!		12
6. 준수사항		14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안내 ·		21
7.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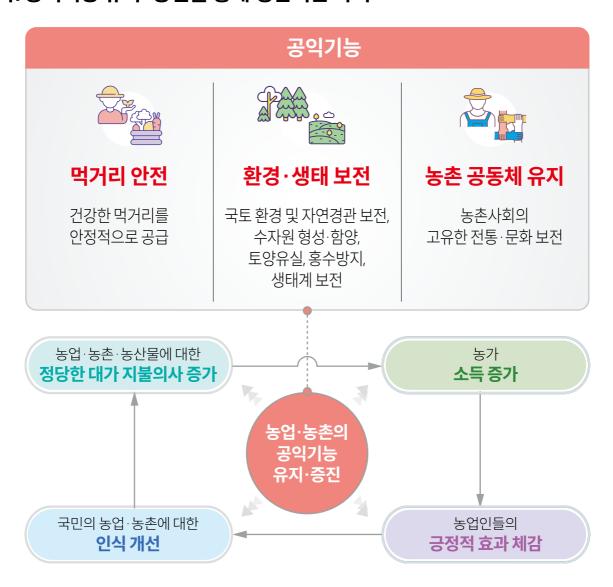
기본형공익직불제 안내서를 <mark>아래 위로 뒤집으시면,</mark> **영농일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농일지 작성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입니다.

# 1. 공익직불제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 가.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생산되는 가치



# 나.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mark>정액</mark> 으로 130만원 지급
공익직불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축산물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유지·개선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 다. 혜택이 늘고 있는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합니다.



#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 가.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기존 수령자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나.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쌀직불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 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Q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 가.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 농가 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 ① 배우자
-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 지급 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mark>농업인 각각의 요건</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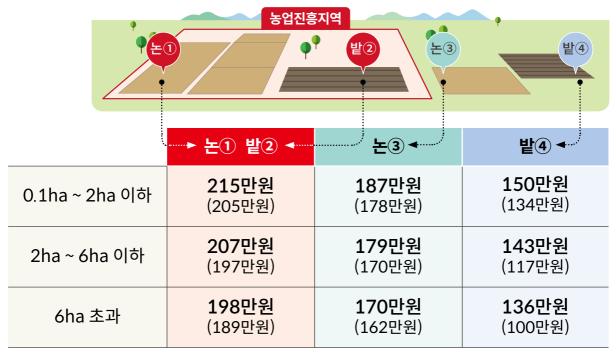
-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나.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 지급단가: ha 당



\*'**25년 단가**('24년 단가)

# Q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이라한다)은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이고 소농직불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지급대상 농지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공익직불제는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실수로 인해 부당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 내가 신청해야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 나. 주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장기 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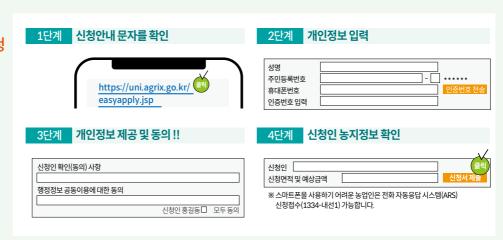
##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Α

스마트폰 or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를 참고하시고, 대면(방문) 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 신청을 못한 경우는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는 방문신청 대상임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



# 5. 부정수급은 절대금지!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용되며 부정수급자는 엄격한 법적 처분(환급,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과태료 등)을 받습니다.

# 가.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 까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b>부정한 방법</b> 으로 직불금을 <b>등록 · 수령한 경우</b>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1 년	ТОТЫЯ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b>부정한 방법</b> 으로 <b>농지 등을 분할</b> 하여 <b>등록·수령한 경우</b>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十世	T0TH7	세세구기급	소농 면적직불	
등록	-	_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 그리고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제한 중인 농지인지 여부를 임대인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신고포상금 제도

•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관원 또는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콜센터(1334)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 분할 한 사람을 신고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 주요 위반 사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불금은 실제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히, 신규 농업인 등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23년부터 강화되었으며, 허위서류 제출을 확인하고자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확인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6. 준수사항

직불금을 100% 전액 받기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 시 직불금은 감액됩니다.

# 가,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 지급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 3회 이후 40% 감액

+

여러 건을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

준수사항 위반 시 각 항목당 총액의 10% 감액



# 예시

**2023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024년**에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 Q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 영농활동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고계시는 필수안내서 뒷편에 간편 그림영농일지를 첨부해 놓았으며,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같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 나. 17개 준수사항 한 눈에 보기

#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영농 작업하실 때

주의하기

농지는 **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요

가축분뇨는 **②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요

- ③ 농약 ④ 기타 유해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맞게,
- **⑤ 화학비료는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해요
- **6 생태계 교란생물**은 키우지 않고,
- **1**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해요

영농 작업 끝난 뒤 잊지않기 농작업 내용은 **③ 영농일지**에 기록해요

- **❸ 영농폐기물**은 소각·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려요
- ①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 ① 농약·가축분뇨는 버리지 않아요

농산물 🛈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요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공익직불제 **(8)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요** 

- **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해요
- **⑤ 농업경영정보**(경작하는 농지, 재배품목 등)가 변경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해요
- **☞ 하천수, ☞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고 사용해요

# 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구체적 실천 방안 알아보기

#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되지 않은 농지 :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조경수 등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합니다.
-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논농업)농지 주변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② 가축분뇨는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가축분뇨법」제13조의2, 제17조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살포지·살포량 등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기
  -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주기

# Q

## 직불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까?



-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시·군·구에서 지급 금액을 산정·지급하게 되며,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각각에서 면적비율에 따른 직불금을 산정·지급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직불금에 대한 감액처리 및 적용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③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농약관리법」제23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식품위생법」제7조

-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시기와 사용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 4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식품위생법」제7조

-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 기타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 **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흙토람, http://soil.rda.go.kr)



# ①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하지 않기

「생물다양성법」제24조

- 우리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 교란식물 :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 생태계 교란동물: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 **1**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식물방역법」제30조의2

●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농업기술 센터, **1833-8572**)해야 합니다.



# ③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보관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합니다

#### 작성방법 수기,온라인 등 농업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 -본 안내서를 아래 위로 뒤집으면 영농일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 페이지의 '사용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영농일지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www.mafra.go.kr/ gon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수첩, 달력, 엑셀 등)가 있으신 경우 기존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 ⑤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1제12조

●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폐농약 수거

# 우리 마을에는 공동집하장이 없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부재 등 수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수거일 수거 장소를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합니다.
  - 일정, 장소 등 공동 수거의 날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관리하기

「비료관리법」제19조의2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비를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① 공공수역에 농약·가축분뇨 배출하지 않기

「물환경보전법」제15조,「가축분뇨법」제10조

- 농업용수로, 하수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유출· 방치하면 안됩니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②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키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본공익직불 통합콜센터는?

Α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1334번으로 기본공익직불제 관련하여 질의하는 곳입니다.

 제도 및 시스템 문의, 부정수급 신고, 공익직불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기본직불 ARS 신청, 대면교육 출석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콜센터 1334 (내선 1~5)

내선1.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 공익직불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 기본형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 관련 문의

# ⑱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완료시 2일 이내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확인: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됩니다.

#### 모든 농업인을 위한 정규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신규 신청자, '24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 방법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활용 가능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마을회관등 찾아가는 교육 대면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문의 : 지자체(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 방법:'네이버,다음'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agriedu.net 입력 후 ① 농업교육포털 첫 화면에서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 ②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클릭 → ③ '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경영체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④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온라인 ⑤ 정보를 확인하고 '**로그인**' 클릭 → 교육 ⑥ 정보제공 동의 네모박스 '**체크'** 및 '**확인'** 클릭 →

- ⑦ 강의실 자동 이동 및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교육 이수
- · 문의: 온라인 교육 콜센터 1811-8656
  -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서비스 종료로 크롬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QR코드**를 <mark>스캔</mark>하셔도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0세 미만 농업인을 위한 모바일 교육(URL)

- 대상: 70세 미만(56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 (제외: 신규 신청자, '24년 준수사항 위반자)
- · 방법 :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내용확인
  - ① 문자 하단의 교육 **접속 URL 링크** 클릭 →
  - ② '**정보제공동의'**(네모박스) 클릭 →
  - ③ '수강하기' 클릭 →
  - ④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 영상 시청
- · 문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56

#### 7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ACS)

- 대상: 70세 이상(55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 (제외: 신규 신청자, '24년 준수사항 위반자)
- · 방법: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 ①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 청취**(약 5분) →
  - ② 완료시 교육 이수 처리
  -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이수 가능
-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34

#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책임자(이장 등)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가꾸기 등

#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목적으로 현장에 온 조사원이 재배면적을 확인하고 간 뒤에는 경영체 등록내용도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거가요?
- A 현장 이행점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농관원에 직접 내방 하시거나 전화(1644-8778)로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경영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①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하천법」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000㎡ (약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①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지하수법」제7조, 제8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Q 부모님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계셨는데 농사를 그만두시면 제가 승계받을 수 있나요?
- A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고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을 이수하시면 2일 이내에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더불어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농업교육포털에서 수료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Q 전화교육 대상자가 아닌데 전화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이수처리가 되나요?
- A 전화교육을 들으실 수는 있으나 신청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듣지 않으시면 이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7.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나.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 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 지역 확대
- 라.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 마.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바.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아.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 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9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합니다.
  - 특히, 올해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 지자체는 전략작물(콩, 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적극 이행 해야 합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추진배경

쌀 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향후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 감축 추진

- 주요내용
-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하고 지자체는 전략 작물(콩, 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 휴경 등으로 적극 이행
- 시행일

2025년 1월

# 나.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개편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 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೬  700 → 950  500 → 750  350 → 570    발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 780	<b>'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체계 변화</b> (단위 : 천원)				
반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 780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밭	논		700 → 950	500 → 750	350 → 570
	ЫŁ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 780
과수 1,400 1,200 700 → 840	핕	과수	1,400	1,200	700 → 840

-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은 '25.1월 중 개정 예정으로 '25년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지원 강화

#### ■ 추진배경

'20년 이후 친환경 인증면적 및 농가수 지속 감소 추세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원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논단가(ha당 25만원↑), 유기지속<sup>유기 6년차~</sup> 단가(유기 단가의 50 → 60%), 유기전환기<sup>유기 인증전 3년</sup> 단가(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확대 : 기존 0.1 ~ 5.0ha → 0.1 ~ 30ha

#### ■ 시행일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 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 지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 대상품목: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집니다.
  -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판매) 전환 검토
  -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 추진배경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요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24년 73개)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녹두, 참깨, 생강 품목 신규 도입하고,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 가입으로 전환
  - \* 신규도입품목 판매 전 주산지 중심 설명회 추진 예정

#### ■ 시행일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 라,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됩니다.
  - <mark>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mark>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에 포함

#### ■ 추진배경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 ■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농업인 부담 감소 및 농가 경영 안정
- 시행일

2025년 상반기

# 마.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2

■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동계 :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모든 품목 50만원/ha)

하계: 조사료(430만원/ha), 옥수수(100만원/ha), 두류·가루쌀(200만원/ha)

■ 2025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 대상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됩니다. (단가 100만원/ha)

#### 단가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25년) 동계 :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밀 100만원/ha**, 그 외 50)

하계: 조사료(500만원/ha), 옥수수·깨(100만원/ha), 두류·가루쌀(200만원/ha)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 추진배경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목표 대폭 확대

#### ■ 주요내용

구분		품목	지급단가(ha당)	
	丁正		'24년	'25년
	동계	밀	50만원	100만원
동계		보리 등 식량작물 및 동계 조사료	50만원	50만원
단작		두류, 가루쌀	200만원	200만원
하계	식용 옥수수, 깨(참깨, 들깨)	100만원	100만원	
		하계 조사료	430만원	500만원
이모작	동계+하계	(동계) 밀, 동계 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100만원 추가	100만원 추가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바.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됩니다.
  -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되었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 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 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 추진배경

친환경축산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

#### ■ 주요내용

ㄱㅂ		2024	2025		
구분		2024	유기	유기지속	
한우 마리		170,000	370,000		
	젖소(우유)	리터	50	122	
	돼지	마리	16,000	27,500	
	산란계(계란)	개	10	20	
지급단가	육계	마리	200	490	유기 지급단가 × 50%
	오리	마리	400	630	,,,,,,,,,,,,,,,,,,,,,,,,,,,,,,,,,,,,,,,
	오리알	개	20	27	
	산양	마리	4,584	14,369	
	산양유	리터	34	261	
지급한도		3천만원	5천만원	2천5백만원	
수급기한		5개년(5회)	5개년(5회)	6년차 이상(6회~)	

#### ■ 시행일

2025년 3월 신청(지원 대상기간: '24.11.1. ~ '25.10.31.)

# 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합니다.
  - '24년 3만명 대상으로 50개 시·군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5년에는 150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여성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 추진배경

'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 주요내용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24년 3만명, 50개 시·군)

#### ■ 시행일

2025년 1월

# 아.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동안의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합니다.
- 기존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아이 **돌봄방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 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운영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농번기 보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 추진배경

'14년부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 ■ 주요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대상연령은 기존 만2세 ~ 초2에서 초4까지 확대
- 돌봄방 운영기간을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 ■ 시행일

2025년 1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